

알기 쉬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이병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6.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법 제13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도급거래에 있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종업원의 임금이나 자재대의 지급이 곤란해지고 최악의 경우 도산에까지 이르는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의 안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서는 대금의 지급 기한과 방법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적물 수령일은 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의 지급 기일로 보며, 설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의 지급 기일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의 지급 기일로 간주한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 공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의 상당 금액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으로 지급시 어음할인료 부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은행, 단기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에서 할인이 가능할 것이어야 한다.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어음 교부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93년 4월 1일 이후는 연 12.5%로 되어 있다.

지급 기일을 경과한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 지연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이 되며, 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5%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할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법정 지급 기일의 기산일

하도급법상의 목적물 수령일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이 된다. 그러나 납품 거래가 빈번하여 부득이 업무 절차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마감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목적물을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상의 검사 시기를 잘못 혼동하여 검사 종료일을 목적물을 수령일로 간주하는 사례가 있는데, 목적물을 수령일은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이 실제 목적물을 수령일이 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검사가 종료된 때에 인수할 수 있다.

실제 대금 청구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 후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을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이라 볼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당초 납품일 전에 목적물의 일부를 조기 납품한 경우에도 수령일을 기산일로 하여 법정 기간 내에 그 해당분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대금지급 기산일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상시 일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일정량을 납품시키고 매월 사용한 물량에 대하여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측에 재고 부담 위험을 지도록 함과 동시에 상시적인 지급 지연이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하도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반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제출받고도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매회 납품 대금 지급시 일정 부문을 유보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며 유보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 제13조 제 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 이자가 적용된다.

하도급대금의 직불제(법 제14조)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은 발주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고 합의한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하여 대금 지급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중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공사 예정 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또는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이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에게 양도되어 있는 경우에도 계약 당시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직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합의하였다면 설사 원사업자가 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불할 수 있는 권리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사의 원만한 진행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다.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의 직불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설계 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 의무(법 제16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 금액의 조정은 계약 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계약시에 조정 사유, 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조정 절차와 방법을 미리 명확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계약조건상 계약 금액의 조정 방법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라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계약 금액을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어야 한다.

조정 시점 및 지급 기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경제상황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 시점 이후의 납품분에 대해 대금을 조정하여 준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은 조정 기준 시점 이후의 하도급거래분만 해당되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 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조정 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주어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 상승분등을 지급받았을 경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동기간을 초과하

여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연 25%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방법

원사업자가 10%의 지수 조정률을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을 경우 아래의 예시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한 수급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해 주어야 한다.

〈 예 시 〉

- 계약 일자 : 95. 6. 30.
- 공사 기간 : 94. 7. 15.~95. 6. 30.
- 계약 금액 : 100,000,000원
- 94. 12. 31. 까지의 기성금 : 60,000,000원
- 선급금 지급일자 및 금액 : 94. 7. 20.
30,000,000(계약 금액의 30%)
- 물가 변동 기준일 : 95. 1. 1.

물가 조정금액은 물가변동 적용 대가인 40,000,000원에 조정률 10%를 곱한 4,000,000원이 되는데, 이 중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30%를 공제하면 실제 조정하여야 할 금액은 2,800,000원이 되고, 조정된 계약금액은 102,800,000원이 된다.

만일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었다면 30일 초과 기간에 대해 연 2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2,800,000원 × 지연일수 × 25%)를 지급하여야 한다. 365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법 제4조)

하도급거래 단계를 편의상 계약 단계, 사업활

동 단계 및 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단계의 3단계로 분류할 경우, 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볼 수 있다.

하도급법상에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둘째는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조리적 측면에서 정당치 못한 방법, 즉 자신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임의로 정한 가격 수준을 강제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거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통상 지급되는 대가'라 함은 일정 거래 지역에서 동종 또는 유사 물품의 제조등을 업으로 하는 대다수의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되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협조 요청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다량 발주를 전제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 발주에 있어서는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소량 발주하는 경우
-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납기(공기)등이 촉박하다는 이유등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상당량의 작업을 진행시킨 후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없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준이나 견적 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경우

- ⑥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물품이 할인 판매·경품류 제공 등으로 정상적으로 판매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가격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는 경우

이상에 열거된 유형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상지급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된다.

건설공사로서 원도급 금액의 88% 미만으로 하도급 금액이 결정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나 원도급 금액의 일정 수준이하라 하여 무조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양기간에 고정적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상호 협의하에 저가 수주가 가능하고 설계 기법 또는 기술 개발에 의해 원가절감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도급계약 금액이 원도급금액의 일정 수준 미만이라고 하여 하도급법상 당연위법은 아니다

차기 공사를 미끼로 금회 공사를 직접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로 수주받게 한 뒤 차기공사도 주지 않는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부당한 방법은 수급사업자의 묵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의 실제 이용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원사업자의 약속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추후 부당한 대금의 결정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의 표준 품셈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경우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없이 결정된 표준품셈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부당한 대금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표준품셈의 적정성과 그 적용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당해 표준품셈이 통상지급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이용됨이 입증되어야 한다.

2 부당한 수령 거부의 금지(법 제8조)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거나 불가피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 위탁등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및 인수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위탁 내용과 검사 기준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하다는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② 검사 기준을 통상의 기준보다 높게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원자재등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늦게 공급하여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가 일부 물품을 수령하고 발주자, 외국수입업자나 고객의 클레임 또는 판매부진등을 이유로 새로 발주한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⑤ 수급사업자의 어음 및 수표가 부도가 나거나,

제3자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회사 정리의 신청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 ③ 수급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④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 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라 볼 수 있다.

원사업자는 ①, ②의 경우 계약을 최고없이 해제할 수 있으나 ③, ④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래를 일시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약 해제나 해지없이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3 부당 반품의 금지(법 제10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도급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지연에 의한 납기 지

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것이다.

표본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제조 공정중 검사하지 않은 것 가운데 불량품이 발견된 경우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표본검사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불량품의 반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나 불량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4.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법 제11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도급법상 규정되어 있는 부당감액 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②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해 합의를 하였으나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③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 기일 전에 징수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에 따른 손해 발생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⑤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 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등이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감액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 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
- ② 하도급 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원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자연 지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④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⑤ 총액으로 계약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⑥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간접 노무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을 감액하는 행위
- ⑦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⑧ 수출용 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달리 전가시킨 경우 등이다.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란 발주시에 정하여진 하도급대금에서 일정액을 감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최초 계약시 단가는 그대로 둔채 제조 위탁하는 물품의 규격이 다양하고 원가도 수시로 변동한다는 이유로 규격이나 원가변동을 고려하여 감액할 경우에도 위법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원사업자가 자사 상품에 대한 홍보 및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염가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염가할인판매의 일정분을 수급사업자에게 협조 또는 강요를 통해 단가를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도 부당 감액이 된다고 볼 수 있다.

5.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도급법상의 대물변제는 민법 제466조의 규정과 같이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승낙을 얻어 하도급대금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때에는 대금지급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물변제에 해당되며, 동대물을 회수하고 현금 또는 어음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한다.

일반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대금 대신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분양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이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 법 위법이 되나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어떤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당초 계약에 현금 지급기준으로 한 것을 대물변제 하였거나 대물변제한 것의 실제 가치가 하도급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물변제로 위법 가능성이 높다.

6 부당한 경영 간섭, 보복 조치 및 탈법 행위의 금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18조), 자기가 이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9조).

또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0조).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이유로 특정인을 채용토록 인사에 간섭한다든가 특정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간섭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모든 경영 간섭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사업자가 노임, 장비 사용료 등을 제때 지급치 않아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알선해 준다면 위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부당한 보복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의 신고 등을 이유로 협력업체의 평점을 낮게 처리하여 거래를 제한 또는 정지한다던가, 타 원사업자에게 동사실을 통보하여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협력업체에서 제외시킨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며 동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탈법 행위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상 규정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이나 금지사항을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서 면탈하려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행위의 시정조치로 하도급대금, 어음 할인료 등의 지급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을 하였으나, 차기 기성이나 단가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발기 부전

남편

의 그것이 땃畋하게 서는 것이 소원인 부인이 어느날 인도에 가면 용한 물건이 있어서 해결된다기에 남편과 함께 인도에 갔다. 그 용하다는 물건을 찾으러 거리를 한참 헤매던 중 거리에서 노인이 피리를 불자 바구니의 코브라가 머리를 발딱 치켜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찾는 것이 바로 저것이다’ 하고 속으로 폐재를 부르면서 노인에게 물었다.

“코브라를 훈련시켰나요?”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아닙니다. 이 피리 덕분입니다. 이 마법의 피리를 불면 어떤 것이라도 땃畋하게 일어서지요. 그러면 다른 시범을 보여 주지요.”

노인이 땅바닥에 새끼줄을 던지고 피리를 불자 새끼줄은 딱딱한 막대기처럼 일어서는 것이 아닌가. 남편이 자고 있는 호텔로 돌아와 부인이 서둘러 옷을 벗고 침대 옆에서 피리를 불었다. 그랬더니 남편이 덮고 있는 이불이 군용 A텐트같이 되지 않는가.

눈물이 날 것 같이 기쁜 부인이 돌진을 하려고 이불을 걸었을 때 땃畋하게 서 있는 것은 남편의 그것이 아니라 팬티 끈이었음을 발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즈음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한창 유행하고 있는데, 바로 서야 할 것이 서지 않는 경우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발기 불능, 즉 임포텐츠란 발기가 안 되거나 발기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서 만족스런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원인은 약 80%정도가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

‘한국 남자의 외음부에 대한 조사’에서 보면 직장인이 임포가 되는 원인으로 직장 상사에게서 받은 꾸지람과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적으로 볼 때는 4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임포의 예방법으로는 부부 관계를 갖는 상대자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상대자로 하여금 서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술이나 약물, 담배같은 것도 적당히 절제를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적당한 운동과 임포는 반드시 치료될 수 있

이광연

이광연 한의원 원장



옛날 중국에 양치기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치는 양들은 하루 종일 발기가 되어 있고, 수시로 관계를 갖는 것을 궁금하게 여겨 유심히 관찰한 결과, 양들이 삼지구엽초만 뜯어 먹는 것을 보았다.

다는 자신감과, 아내 역시 용기를 주면서 치료를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임포의 원인을 명문화쇠(命門火衰), 심비허손(心脾虛損), 간울불소(肝鬱不疏)로 보았으며, 이럴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약이 음양과(삼지구엽초)란 약재다.

옛날 중국에 양치기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치는 양들은 하루 종일 발기가 되어 있고, 수시로 관계를 갖는 것을 궁금하게 여겨 유심히 관찰한 결과, 양들이 삼지구엽초만 뜯어 먹는 것을 보았다.

노인도 이것을 본받아 삼지구엽초를 복용한 결과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악일 정도로 효과가 좋다. 하루에 40g 정도를 다려서 차처럼 복용하면 임포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